# 겸임교수 임용 등에 관한 규정

### 제1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(이하 "본 대학교"라 한다)「교원인사규정」제2조제5항의 겪임교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확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자격) ① 겸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- 1.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
- 2. 담당하게 될 수업 및 연구내용이 원소속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- 3. 원소속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. 다만, 전일근무를 하는 겸 임교수는 원소속(본직) 기관의 휴직자도 포함 가능함.
- 4. 순수 학술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·실험·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
- 5. 원소속(본직) 기관장의 임용 동의를 받은 자
- 6.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및 전임연구원이 아닌 자
- 7.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유사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
- ②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율은 「교원인사규정」제18조제1항의 <별표 1>에 의한다.
- 제3조(결격사유)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겸임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.

#### 제2장 임용

- 제4조(정년) 겸임교수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 다만, 정년에 도달한 겸임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.
- 제5조(임용일)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제6조제3 항 또는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.
- 제6조(임용기간)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. (개정 2019.12.9.)

#### ② (삭제 2019.12.9.)
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.
- 1.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·출산휴가·휴직·파견·정계·연구년(6개월 이 하) 또는 직위해제·퇴직·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겸임교수가

제3편 인사행정 3-2-30~2

필요한 경우

- 2.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
- 3.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(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) 및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규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
- ④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재임용 통지가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
- 제7조(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단과대학에는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.
- ②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학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관련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.
- 제8조(신규채용)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.
- 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, 전공심사,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기초 심사와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.
- ③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- 제9조(임용) ① 임용기간, 강의시간, 임금, 면직사유, 복무 등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 하여 임용한다.
- ②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.

#### 제3장 복무 및 처우

- 제10조(강의시간) ① 겸임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.
- ② 담당 강의시간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다.
- ③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며, 비교과 및 계절학기 강의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제11조(복무 및 처우) ①「사립학교법」, 정관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 야 한다.
- ②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③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퇴직급여의 적용은 관련법령에 따른다.
- ④ 계약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(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)까지 소속 학과(부)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- 격임교수임용등에관한규정 3-2-30<sup>~</sup>3
- 제12조(강의료) ① 강의료는 담당교과목에 대해 강의하는 시간뿐만 아니라, 강의를 계획·준비하고 수강학생의 학습지도·평가·환류 등의 학사업무와 이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.
- ② 강의료 외에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③ 강의료는 본 대학교「강의료규정」에 따른다.
- 제13조(임용보고) 겸임교수를 임용한 경우에는「사립학교법」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4장 퇴직 및 면직

- 제14조(당연퇴직) 「국가공무원법」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.
- **제15조(면직사유 등)**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말일에 면직할 수 있다.
- 1. 소속 학과(부)가 폐지된 때
- 2.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때
- 3. 제6조제3항에 따라 겸임교수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
- 4. 임용기간 중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때
- 5.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 때
- ③ 원소속(본직) 기관의 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면직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# 제5장 보칙

제16조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하는 겸임교수부터 적용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겸임교수규정」은 폐지한다.
- ③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겸임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임용기간, 임무, 강의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「겸임교수규정」을 적용한다.

#### 제3편 인사행정 3-2-30~4

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 ② (임용기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임용시 계약기간을 적용한다.